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 나.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 세목 변경(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나. 5만원 이하 재산세 일시 고지(안 제21조의 3)

- 주택분 재산세 납기 중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신설

다. 주민세 재산분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절 제28조 ~ 30조)

- 균등과세적 성격의 종전 재산할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편제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절 제31조 ~ 33조)

- 소득과세적 성격의 종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편제

마.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3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3. 개정근거

- 가.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2010. 1. 5) 및 서울시 세제과-125(2010. 1. 6)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0. 1. 28. ~ 2. 9.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2. 18)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세”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로 하고 ,
“세율 기타”를 “세율, 그 밖의”로 하고,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하며, “조례의”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에”를 “각 호에서”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를 “서
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제방법등을”
을 “구제방법 등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조 중 조 제목을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으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중 “부과징수사무중”을 “부과징수사무 중”으로 하고, “납세의고지”를 “납세의 고지”으로 하고, “수납 기타 특히”을 “수납,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6조의2 중 조 제목을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으로 하고, “법제 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조 제목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의 2”을 “법 제26조의2”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익일부터”를 “다음 날부터”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기한내에”를 “기한 내에”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당해가산세”를 “해당 가산세”로 각각 한다.

제8조 중 조 제목을 “허가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허가등을”을 “허가 등을”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의”을 “허가 등의”로,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등을”을 “허가 등을”으로 각각 한다.

제9조 중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기 기타”를 “사기, 그 밖의”로 하고, “세월에 의하여”를 “세월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한다.

제12조 중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를 “다른 법령, 그밖에 특별한”으로, “15일이내로”를 “15일 이내로”로 각각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 제39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우편요금등을”을 “우편요금 등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각각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으로, 같은 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를 “시행규칙 제39조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를 “시행규칙 제39조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기타실비”를 “ 및 그 밖에 실비”로 하고, 제4항 중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하고,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에 따라”로,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14조의4 중 조 제목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을 “명”으로 각각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5급이상의”를 “5급 이상의”으로 각각 하고, 제3호 중 “3년이상”를 “3년 이상”으로, 제4호 중 “기타”를 “, 그 밖의”으로 하고, 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제3항중 “약간명”을 “약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한다.

제14조의5제2항 본문중 “인”을 “명”으로 각각 하고,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제4항 중 “인정하는때에는”을 “인정하는 때에는”로, “기타”를 “ 및 그 밖의”로, 제6항 및 제7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한다.

제14조의6의 본문 중 “의원이”를 “위원이”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호 중 “3회이상”를 “3회 이상”으로, 제4호 중 “품의”를 “품위”로, 제5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으로 각각 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69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담당하는”

를 “담당한”으로, 제1호 및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기타”를 “및 그 밖의”으로, 같은 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에 제기하는”을 “각 호에 열거하는”으로, 제3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각각 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6조에 따라”로, “각호에 제기하는”을 “각 호에 열거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 5호 중 “변경년월일”를 “변경연월일”로 한다.

제18조 조 제목을 “공용, 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6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로, “년월일”을 “연월일”로, “기타”를 “그 밖에”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조사에 의하여”를 “조사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각각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각각 한다.

제21조제3항 중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가목 중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로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9조에 따른”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3호가목 중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가목 중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본문 내용 중 “법 제188조 제1항제2호나목”를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축년월일”을 “건축연월일”로, “서울특별시세조례”를 “서울특별시세 조례”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각각 하며,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과세주택으로 된 때”를 “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같은 조제2항 중 “설치년월일”을 “설치연월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25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건조년월일”을 “건조연월일”로, “발생년월일 기타”를 “발생연월일, 그 밖의”로, “30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조년월일”을 “제조연월일”로, “발생년월일 기타”를 “발생연월일, 그 밖의”으로 하고, “30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27조 중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장 [제1절(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을 삭제하고, 제2장에 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 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각각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7호 중 “사업소세”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로 각각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p>제1조(과세의 근거) <u>서울특별시마포구세</u> (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u>세율 기타</u>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u>기타</u>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u>의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에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1. 세무공무원 :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p> <p>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u>구제방법</u>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p> <p>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u>한다</u>.</p> <p>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면허세</u> 2. <u>재산세</u> 3. <u>삭제</u> <p>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소세</u> 	<p>제1조(과세의 근거) <u>서울특별시 마포구세</u> (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u>세율, 그 밖의</u>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u>또는 그 밖에</u>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에서</u> 정하는 바에 <u>따른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 호에서</u> 정하는 바에 <u>따른다</u>.</p> <p>1. 세무공무원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p> <p>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u>구제방법</u>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p> <p>제3조(세목) <u>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면허세</u> 2. <u>재산세</u> 3. <u>주민세 재산분</u> 4. <u>지방소득세 종업원분</u>

현행	개정안
<p>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p>	<p>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구청장은 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p>	<p>제6조의2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u>당해가산세</u>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p>	<p>③ <u>제2항에 따라</u>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u>기한 내에</u>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 및 <u>제3항에 따른</u>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u>해당 가산세</u>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p>
<p>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당해</u>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u>지체없이</u>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허가등의</u> 종목 3. <u>허가등을</u> 제한하는 이유 4. (생략) 	<p>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u>각 호의</u>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해당</u>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u>지체 없이</u>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허가 등의</u> 종목 3. <u>허가 등을</u> 제한하는 이유 4. (현행과 같음)
<p>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p>	<p>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p>
<p>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u>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u>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u>15일 이내로</u> 한다.</p>	<p>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제12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 <u>영 제39조의제2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u>법 제51조의2제1항의</u>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p>	<p>제12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 영 제39조의제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p>
<p>제13조(공시송달) <u>법 제52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p>	<p>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u>(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u>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u> 준용하며,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u>(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u>시행규칙 제39조를</u>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u>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u> 준용하며,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u>시행규칙 제39조를</u>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 <u>기타</u>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u>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u>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u>서면에</u>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 구성등) ①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현행	개정안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u>3년이상</u> 담당 한 경력이 있는 <u>5급이상</u>의 전직공무원</p> <p>2. (생략)</p> <p>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 무사의 직에 <u>3년이상</u> 종사한 자</p> <p>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 학 <u>기타</u>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p> <p>5. (생략)</p> <p>②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u> 한다.</p> <p>③ 적부심사위원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u>약간명</u>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u>당해</u> 세목을 담당 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u>3년 이상</u> 담당 한 경력이 있는 <u>5급 이상</u>의 전직공무원</p> <p>2. (현행과 같음)</p> <p>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 무사의 직에 <u>3년 이상</u> 종사한 자</p> <p>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 학, <u>그 밖에</u>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의 직에 재직하는 자</p> <p>5.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u>총괄</u>한다.</p> <p>③ 적부심사위원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u>약간 명</u>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u>해당</u> 세목을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제14조의5(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 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 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p> <p>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u>비치하여야</u> 한다.</p> <p>④ 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 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때에는</u> 납세의무자 <u>기타</u>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에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 다.</p> <p>1. ~ 2. (생략)</p>	<p>제14조의5(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 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인사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p> <p>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을 작성하여 이를 <u>갖추어 두어야</u> 한다.</p> <p>④ 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 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때에</u> 는 납세의무자 <u>및 그 밖의</u> 이해관계인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에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⑦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서울특별시장 경우)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4. (생략) ⑧ (생략)</p>	<p>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서울특별시장 경우)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u>의원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p> <p>1. 연속하여 <u>3회이상</u>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2. ~ 3. (생략) 4. 위원의 <u>품위를 손상</u> 한 때 5. <u>질병 기타 사유</u>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p>	<p>제14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u>위원이</u>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p> <p>1. 연속하여 <u>3회 이상</u>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2.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의 <u>품위를 손상</u> 한 때 5. <u>질병, 그 밖의 사유</u>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p>
<p>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p> <p>① <u>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u>담당하는</u>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p> <p>③ <u>제2항제2호에 의한</u>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p> <p>① <u>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u>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u>담당한</u>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u>3명</u>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u>4명</u></p> <p>③ <u>제2항제2호에 따른</u>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u>예산 범위에서</u> 수당 및 <u>그 밖의</u>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통세</p> <p>제1절 면 허 세</p> <p>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기타</u>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p>제2절 재 산 세</p> <p>제17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교회, 성당, 불당의 설립 및 경내지 <u>변경년월일</u>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 8. (생략) <p>제18조(공용,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통세</p> <p>제1절 면 허 세</p> <p>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p>제2절 재 산 세</p> <p>제17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교회, 성당, 불당의 설립 및 경내지 <u>변경년월일</u>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 8. (현행과 같음) <p>제18조(공용, 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186조에 따라</u>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u>지체 없이 해당</u> 재산에 대하여 <u>제17조에 따른</u>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u>연월일 및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u>지체없이</u>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u>당해</u>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지체없이</u>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u>해당</u>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지체 없이</u>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 ~ ② (생략)</p> <p>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u>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u>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1조의2(세율) (생략)</p> <p>1. (생략)</p> <p>가. ~ 다. (생략)</p> <p>2. 건축물</p> <p>가. <u>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제21조의2(세율)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건축물</p> <p>가. <u>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u>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현행	개정안
<p>나.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생략)</p> <p>3. (생략)</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생략)</p> <p>4. 선박</p> <p>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생략)</p> <p>5. (생략)</p>	<p>나.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u>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u>영 제139조에 따른</u>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 <u>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u>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현행과 같음)</p> <p>4. 선박</p> <p>가. <u>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u>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u><단서신설></u></p> <p>4. (생략)</p> <p>③ (생략)</p>	<p>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u>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u>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u>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u>법 제18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u>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건축년월일</u>,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서울특별시세조례</u>(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u>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u></p> <p>4. ~ 7. (생략)</p> <p>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u>설치년월일</u>,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건축연월일</u>,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서울특별시세 조례</u>」(이하 “시조례”라 한다) <u>제20조에 따라</u>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u>설치연월일</u>,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u>제20조에 따라</u>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u>건조년월일</u>,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u>발생년월일</u>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u>건조연월일</u>,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u>발생연월일</u>,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u>30일 이내</u>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u>제20조에 따라</u>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u>제조년월일</u>,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u>발생년월일</u>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u>제20조</u>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5. (생략)</p>	<p>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u>제조연월일</u>,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u>발생연월일</u>,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u>제20조에 따라</u>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u>제23조 내지 제26조의</u>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u>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u>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설></p>	<p><u>제3절 주민세 재산분</u></p>
<p><u>제28조 삭제('05.6.30)</u></p>	<p><u>제2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u>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u>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u></p>

현 행	개 정 안
	<p>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제29조 삭제('05.6.30)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 으로 한다.
제3장 목적세	〈삭제〉
제1절 사업소세	〈삭제〉
<p>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p> <p>1. 재산할 : 사업소세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p> <p>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p>	<p>제30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p> <p>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p> <p>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u>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p> <p>5.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6. <u>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p> <p>7. <u>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p>
<p>제31조 삭제('95.3.25)</p>	<p>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제3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p> <p>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p> <p>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p> <p>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p> <p>7.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p> <p>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p> <p>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p> <p>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비과세 및 감면사유</p> <p>6.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p>